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】

의안번호
159

2023. 4. 5.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4. 5. / 김영실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. 4. 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4. 13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책무(안 제1조~제6조)
-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(안 제7조~제9조)
-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(안 제10조~제22조)
-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(안 제23조~제2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조례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- 현대의 기후위기는 보다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세계 공통의 문제로서 탄소중립의 실현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인바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선언하고 규정하는 본 기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남양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우리시는 현재 「남양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(2023~2032)」(2022.11. 용역착수~2023.4.일시중단)을 수립 중이며,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 제9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

◦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

- ▶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(7억 2,760만톤) 대비 40%(2억 9,100만톤)을 감축
- ▶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

◦ 법 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

- ②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지사”는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본다.

◦ 법 제11조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

- ② 시·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
2.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
3.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·예측·영향·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
4. 기후위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5.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6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7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8. 녹색기술·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·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안 제3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, 안 제4장 기후위기 적응시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선언적 또는 포괄적 표현 규정에 그치고 있어 현행 개별 조례에서 중복되거나 조례 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화 된 시책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,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, 다양한 신규사업발굴을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
- 안 제10조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)에서는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
- 안 제17조(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)에서는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남양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
- 우리시는 현재 「제2차 남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(2020~2024)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및 성과목표 달성 등 이행 및 추진사항을 평가점검하고 있으며, 2022년 22개 사업 성과목표 446%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,
-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종전 수립된 대책을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보도록 하고
- 안 제5장에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협력에 대해 규정
- 안 제23조(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)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(이하 “실천연대”라 한다)에 참여·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

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

- 추진배경 :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정부 협의체
- 목적 : 지자체 차원의 노력 결집과 상향식(Bottom-up) 기후행동 확산
- 발족/참여 : 2020. 7. 7.(화) / 221개 지자체 가입 (경기도 31개 시군구 포함)
- 역할 : 지자체간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추진 및 정보공유
 - 탄소중립계획 수립·이행·모니터링 / 대표 감축사업 이행 및 우수사례·애로사항 공유
 - 지역 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·운영 / 시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정책 공동 홍보
 - 탄소중립도시 선언 해외선진사례 조사 등 공동 국제활동

- 안 제28조(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)에서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규정
-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
- 남양주시 탄소중립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실정이 잘 반영된 중·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